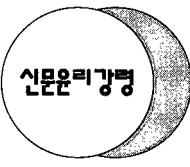


정확성에 더해 진실성 원칙 천명

개정 신문윤리강령의 원칙과 의미



신문윤리강령

해 신문의 날(4월 7일)을 기
해 4월 8일 선포한 새 신문윤
리강령과 실천요강은 올해가 근대신
문 창간100주년이며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우리 언론
의 새로운 행동강령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실로 막중하다.

57년 신문윤리강령이 처음 제정
될 즈음 당시 자유당정권 말기 언론
자유탄압의 수위가 점점 높아가는
상황에서, 언론자유의 수호는 강령
이 지향하는 가장 높은 규범적 가치
였다. 또한 61년 '신문윤리실천요
강'이 뒤따랐고 '신문윤리위원회' 가
발족된 시점도 박정희 군사정권아래
언론의 자유수호는 가장 절실한 과
제였다.

따라서 신문윤리강령이 제1항에
'자유'를 내세운 것은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서 언론이 지향하는 최고의
규범적 가치를 반영한다. 또한 구 신
문윤리강령은 23년 미국 신문편집인
협회가 채택한 '언론강령'의 규범적
가치인 사실주의와 객관주의를 그대
로 따르고 있었다. 이는 19세기 구미
를 풍미했던 사실주의와 20세기 초

반 미국언론계를 지배했던 객관주의
를 반영한 규범적 가치이다.

구 신문윤리강령이 지향하는 자
유주의, 사실주의, 객관주의는 언론
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한계도 지니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특히 한국언론의 전개과정
에서 사실주의와 객관주의는 전자가
언론의 수동적 반사언론의 성향을
부추겼으며 후자가 이를바 '발표저
널리즘'의 폐해를 가져온 이데올로
기적인 방패막이 구실을 했다는 점
에서 심각한 재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신문편집인협회가
75년 언론강령을 '원칙의 성명'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언론의 '독자적 조
사'를 강조한 대목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준다. 따라서 이 점을 참조하
여 새 강령은 언론이 기준의 원칙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실을 추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60년대 이래 우리사회에
물밀듯 밀려온 산업사회, 기술사회,
정보화사회 그리고 후기산업사회로
의 변화된 환경에서 언론이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직업윤

김정기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새 강령은 사실보도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진실성' 원칙을 천명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 언론이 사실보도라는 이름아래 당국의 일방적인
발표를 검증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원칙이다.

리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언론인에게 가장 중요한 취재 및 보도관행과 편집관행에 관해서도 자세한 지침을 두어 현재의 강령을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음은 언론행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높아가는 항의에서 반증되고 있다. 기자들의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허가 없는 문서 빙출, 신분사칭 등이 다반사처럼 일어나는데도 언론인들은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언론윤리불감증이 심각한 수위에 올랐음을 본다. 언론인의 윤리불감증은 이른바 '촌지'가 국제적인 오명의 대명사가 되었는데도 아직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는 데서 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또한 57년 윤리강령 제정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보도영역에 관해서도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언론을 대표하는 세 단체, 곧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한국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개정키로 한 것은 당연한 대처였다.

세 단체가 이를 위해 '신문윤리강령 개정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은 95년 6월이었다. 세 단체가 추천한 각계인사 7인으로 강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원로언론인 박권상 동아일보 고문이 추대되었다. 위원장 이외 위원으로는 공정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동환 변호사, 김창구 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김철수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이용원 서울신문 문화부 차장 그리고 필자가 참여했다.

사실주의·객관주의의 한계

강령개정위원회는 95년 7월 3일 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강령개정작업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한 후 96년 1월 16일 개정안을 마무리짓기까지 거의 6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심도 있는 연구와 토의를 거쳤다. 특히 필자는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95년 8월 아세아제단 후원 아래 영국의 언론불만처리위원회 (Press Complaints Commission)와 미네소타언론평의회(Minnesota News Council)를 방문해 언론윤리

의 실천적 측면을 면밀하게 관찰한 바 있다.

윤리강령 개정 작업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 등 언론의 주요분야에서 현행 강령, 실천요강, 보도기준이 언론사와 언론인의 직업적 행동을 충분히 커버하고 있는지, 필요하지만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또한 새로이 규제받아야 할 언론행위부문이 생겼는지 평가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각 언론단체 및 개별 언론사의 강령 등을 우리나라 언론 현실 및 관행과 비교하여 참조하고 아울러 외국의 언론강령과 관행을 종합검토하여 시안을 마련하고 그 시안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상호토론을 통해 개정안을 만들어 나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개정안이 완성된 것은 96년 1월 16일이었다.

이 개정안이 한 달 후 2월 16일 공청회에 붙여졌다. 박권상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필자의 발표에 이어 편협대표로 유승삼 중앙일보 논설위원, 기협대표로 임철 매일경제 제2사회부장, 학계

대표로 김학수 서강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특히 유승삼 논설위원은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강령전문, 윤리강령 그리고 실천요강에 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부문에 대해서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 후 윤리강령개정위는 유승삼 논설위원과 임철 부장을 초빙하여 두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공청회에서 제

시된 의견을 상당히 수렴하는가 하면 서울신문 문화부 차장 이용원 위원이 문장을 부드럽게 수정하는 등 역사적인 신문윤리문서 탄생에 힘을 쏟았다.

또한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 개별신문사에서 뒤늦게 보내온 의견도 되도록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 4월 4일이다. 이 최종안은 4월 8일 3시 프레스센터 기

자회견장에서 신문협회 최종률 회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성병우 회장, 기자협회 남영진 회장이 세 단체 이름으로 서명함과 함께 역사적인 선포를 끝마침으로써 새 신문윤리강령으로 탄생을 보았다. 이 개정안이 성안되기 전 한국외대 한국어교육과의 남성우 교수에게 의뢰하여 철자, 문법, 그리고 표현상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음을 밝혀 둔다.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신문윤리강령〉

〈전문〉

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이 민주발전, 민족통일,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1957년 4월 7일 '신문윤리강령'을 처음 제정한 바 있다. 이제 그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정보화사회의 출현 등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신문 윤리강령을 다시 채택한다.

제1조〈언론의 자유〉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의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 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2조〈언론의 책임〉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

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칭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언론의 독립〉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4조〈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5조〈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6조〈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제공〉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전명

이번에 마련한 새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우선 구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거의 전면적으로 개정, 보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개정안을 구 강령 및 실천요강과 비교하여 외양적 특징을 살펴보면 강령의 경우 6조에서 7조로 늘려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매체접근의 기회제공을 신설했으며 실천요강의 경

우 규제조항 4개조항을 16개조항으로 대폭 늘려 세부규제부문을 28개 부문에서 63부문으로 확대했다. 여기에는 취재준칙, 보도준칙, 사법보도준칙,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평론의 원칙, 편집지침, 개인의 명예존중과 사생활보호, 어린이 보호, 정보의 부당이용금지, 언론인의 품위기준보강 등이 포함된다.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 이 강령체제를 통괄하는 원칙을 살펴보자. 새 강령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의 실현을 전문에서 새로이 천명하여 강령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로 삼았음을 밝혔다. 이는 '전후 언론헌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1947년 협친스 위원회보고서가 권고한 원칙으로 오늘날 현대 언론이 다짐하는 가장 상

제7조〈언론인의 품위〉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 생활을 이끄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신문윤리 실천요강〉

〈전문〉

우리 언론인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는 이 신문윤리 실천요강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언론인은 정권, 정당 및 정파 등 어떠한 정치 권력이 언론에 대해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② (사회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그리고 기업 등 어떠한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③ (사회적 책임)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 형성과 공공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특정지방, 종교, 인종 등의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2조〈취재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된다.

① (신분 사칭 · 위장 및 문서 반출 금지)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

정적인 보편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구 강령도 '자유'와 '책임' 조항을 제1조와 2조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와 함께 책임을 병행시키고는 있다. 그러나 구 강령은 무게 중심을 언론자유의 수호에 두고 있음은 50년대 자유당정권 말기 강령이 제정되었던 당시 언론탄압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명백하다. 이

번에 마련한 새 강령은 언론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명실 공히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새 강령은 구 강령에 빠졌던 개인의 기본권 존중과 수용자의 매체 접근권 등을 존중하고 있으며 실천요강은 언론인과 언론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직업윤리준칙을 대폭 보강 신설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의 실현을 다짐하는 새 강령은 구 강령과 비교하여 몇 가지 새로운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구 강령이 제3조 '보도와 평론의 태도'에서 '사실의 신속 정확한 전달을 생명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보도'의 '정확성' 원칙을 강령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이번의 새 강령은 사실보도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진실'을

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원,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 지역을 허가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④ (전화 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이 취재 요청을 거절할 경우 거듭된 통화의 연속적인 반복으로 취재원을 피롭혀서는 안된다.

⑤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기자는 개인의 전화도청이나 비밀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3조(보도 준칙)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보도해야 한다.

① (보도 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 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② (미확인 보도 명시원칙)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④ (답변의 기회) 보도 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⑤ (보도 자료의 검증과 영리 이용 금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발표된 홍보자료를 경계해야 한다.

⑥ (피의사실의 검증보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사법 보도 준칙)

언론인은 사법 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① (재판에 대한 부당 영향 금지) 언론인은 재판에 부당한

적극적으로 추적해야 함을 요구하는 '진실성' 원칙을 천명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 언론이 사실보도라는 이름 아래 당국의 일방적인 발표를 검증 없이 그대로 입증된 사실처럼 보도하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원칙이다.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실천요강은 제3조 '보도준칙'에서 보도자료의 검증과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강령은 인권존중과 인권침해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밖에 강령을 지도하는 원칙으로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탐사성을 제시하고 있다.

"취재행위 자체가 언론활동"

새 윤리강령 실천요강은 ①취재준칙 ②보도준칙 ③취재원 명시원칙

④평론의 원칙 ⑤편집지침 ⑥개인의 명예존중과 사생활보호를 포함한다. 그 밖에 ⑦이해상충지침 ⑧언론인의 품위를 새로이 두고 있다.

①취재준칙

새 실천요강은 취재행위가 보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언론활동임을 분명히 하여 직업윤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특징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②(판결문 등의 사전 보도 금지) 언론인은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 문서를 사전에 보도, 평론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보도 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호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①(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제3자 비방과 익명 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③(배경 설명과 익명 조건) 기자는 취재원이 심층 배경 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을 받

아들일 수 있도록 취재원의 소속 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

④(취재원과 비보호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호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⑤(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제6조<보도 보류 시한>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보도 보류 시한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보도 보류 시한의 연장 금지) 기자는 자의적인 상호협정으로 취재원이 원래 요청한 보도 보류 시한을 연장해서는 안된다.

②(보도 보류 시한의 효력상실) 보도 보류 시한은 한 언론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다른 언론사들도 지켜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7조<범죄 보도와 인권 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 형사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이다. 따라서 기자가 취재를 목적으로 한 신분사칭이나 위장, 그리고 허가없는 문서 등의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을 엄격히 규정했다. 또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보여준 무례도 한 취재를 바로잡기 위해 재난취재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으며 또한 병원취재, 전화취재 등에 관한 규칙도 명시했다.

취재행위는 현실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모든 취재행위를 강령이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은 언론행위의 기초이며 출발점이라 는 점에서 직업윤리에서 떠날 수 없다. 취재는 공적 정보이든 사적 정보 이든 공공매체에 실려 나감을 목적 으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띠게 됨을 피할 수 없다.

취재가 직업윤리를 따라야 하는

언론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취재의 개념을 구성해 보면 그것은 △보도의 종속개념이 아닌 목적 개념이며 △보도로부터 이탈된 분리 개념이 아닌 통합개념이며 △총체적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라는 것이다. 우선 취재행위는 보도의 목적을 위한 도구 내지는 수단이라는 통념적인 생각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취재가 목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①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언론인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 정책에 따른다.

② (정신 이상자의 익명 존중) 기자나 편집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로 밝혀질 경우 면책되는 점에 유의하여 신원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

③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④ (미성년 피의자 신원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및 기타 신원 자료를 밝혀서는 안된다.

⑤ (피의자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혐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참고인 등의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 아닌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언론사와 언론인은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 있는 출판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①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 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된다.

② (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 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③ (타출판물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④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언론사와 언론인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9조<평론의 원칙>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질제를 잊지 말아야 하며 특히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종속개념으로 이해될 때 기자들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통념적 생각을 은연 중 갖게 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통념적 생각에 사로잡힌 기자들은 취재가 법과 윤리의 한계를 일탈하더라도 그것은 보다 승고한 보도의 목적을 위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자위케 함으로써 일탈취재를 오히려 양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취재행위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볼 때 그것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점이며 그 사회성은 내재적 윤리성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 추적을 요구

② 보도준칙

미국언론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취재보도행위가 의존했던 원칙으로 △사실주의 △객관주의 △공정주의

가 있으며 60년대 이후 △진실탐사주의 △주관주의 △실존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구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사실주의와 객관주의의 원칙에 주로 의존하면서 공정성을 결들이고 있었지만 새 강령과 실천요강은 이를 원칙과 더불어 진실탐사주의를 추가했다. 이는 현대 저널리즘이 사실전달 뿐만 아니라 진실추적을 해야 한다는 언론의 새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논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단체와 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② (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등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

③ (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편집 지침>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된다.

① (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② (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면배치, 면위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

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된다.

③ (미확인 사실 과대 편집 금지)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된다.

④ (기고 기사의 변경 금지) 편집자는 사외 기고기사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⑤ (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

⑥ (관계 사진 게재) 보도 사진은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⑦ (사진 조작의 금지)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 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① (개인의 명예 · 신용 훼손 금지)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로운 윤리를 반영한 것이다.

새 실천요강은 보도준칙을 두어 사실보도의 정확성을 강조하면서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색이 있다. 이는 ‘사실’이라는 이름의 오보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우리나라 언론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을 입증된 사실처럼 보도하는 잘못된 관행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신문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정치재개를 위한 신당창당의 목적을 위해 정치인과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에게 880억원을 살포했다는 뉴스를 일제히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뉴스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발표했다는 그 점에서 사실이지만 검증받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실은 아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들이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발표를 입증된 사실처럼 보도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거의 모든 신문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880억원의 비자금을 신당창당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 사실이 드러났다.” 또는 “… 사실을 밝혀냈다” 등 수사기관의 일방적 발표를 입증된 사실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진실

보도, 왜곡 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③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 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④ (사자의 명예 존중) 보도와 평론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12조<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된다.

① (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된다.

② (전자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된다.

③ (사생활 등의 사진 촬영 및 보도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공인의 사생활 보도) 언론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제13조<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①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②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③ (유괴 보도 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활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④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악물 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제14조<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된다.

처럼 보도하는 잘못된 보도관행이며 결과적으로 심각한 오보이다.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된 사실처럼 보도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나라 언론윤리실천요강 개정안은 두 규정을 두고 있다.(실천요강 제3조 ⑤항, ⑥항)

의명보다 실명을

③ 취재원의 명시 원칙

기자가 일상적인 취재보도 활동을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부딪치는 문제가 취재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이다. 곧 취재원을 익명으로 다룰 것인가 실명으로 다룰 것인가, 만약 익명으로 다룬다면 지켜야 할 관행은 무엇인가의 문제가 상시적으로 제기된다. 이는 기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윤

리에 속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신문윤리강령, 실천요강, 보도기준, 또는 개별신문사 강령, 그 어느 곳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준을 찾아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 따르는 관행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개정위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자들은 취재원을 실명보다는 익명으로 다루는 관행에 더 익숙

① (기자 본인 및 친인척의 소유주식에 관한 보도제한) 기자는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 정보에 대해 보도해서는 안된다.

② (소유주식 및 증권의 거래금지) 기자는 주식 및 증권 정보에 대해 최근에 기사를 썼거나 가까운 장래에 쓰고자 할 때 그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③ (부동산 등 부당거래 금지) 언론인은 취재 및 기타 언론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기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5조<언론인의 품위>

언론사와 언론인은 언론의 사회적 공기성에 합당하는 높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① (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 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기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②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기자는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

거나 활동해서는 안되며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를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부당한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③ (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된다.

④ (기자의 광고·판매·보급 행위 금지) 언론사는 언론적 종사자(편집자, 기자 등)에게 보급행위 및 광고 판매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언론적 종사자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제16조<공익의 정의>

이 신문윤리 실천요강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① (국가안전 등)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동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② (공중 안녕) 공중의 보건과 안전 및 환경보존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③ (범죄의 폭로)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④ (공중의 오도 방지) 개인이나 단체의 성명 또는 행동으로 공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해져 있지 않나 여겨진다. 곧 이제까지 기자들은 의도적으로든 또는 안 하기로든 취재원을 밝히기보다는 묻어버리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말이다. 기사 중에 인용되고 있는 담화의 발언자가 누구인지, 소개되고 있는 자료의 출전이 어디인지 그러한 정보의 출처가 애매하거나 전혀 없는 기사가 지면을 메우고 있다.

최근 신문기사가 취재원을 다루는 몇가지 사례를 보면 취재원의 익명보도의 관행이 뚜렷하다. 예를 들면 “여권의 한 관계자” “정부의 한 당국자” “야권의 한 소식통” “정가의 한 소식통” 등 취재원을 너무 막연하게 취급하는가 하면 “주민들에 의하면” “재계에 의하면” 등과 같이 취재원을 일반화하는 예도 보이며 심지어는 밑도 끝도 없이 그저 “…라고 알려졌다”라고 표현하여 취재원을 아예 생략해 버리는 수도 있다.

취재원을 이렇게 묻어버리는 관행은 기자로 하여금 추측기사를 남발케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기사조작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언론이 광범하게 사용하는 이러한 취재원의 익명보도는 저널리즘의 원칙에 반하는 관행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의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에는 ‘지미의 세계’ 사건이 터지기 전 다음과 같은 취재원

의 명시원칙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지는 취재원이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한 어떠한 정보도 그 출처를 모두 공표할 것은 약속한다. 취재원의 익명요청에 동의한 경우는 사밖으로 그것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기자는 출처가 비공개되는 정보에 관해서는 우선 비공개의 조건을 밝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출처로부터 같은 정보를 입수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마저 불가능하다면 취재원에게 익명의 이유를 요구하며 그것을 기사에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될 수 있는 한 취재원의 신원을 어떤 형태로든(부서나 지위) 밝혀야 하며 또한 그것을 보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워싱턴 포스트는 81년 자넷 쿠크 기자가 취재원을 조작하여 풀리처상 까지 탄 사건이 터진 후 취재원 명시원칙을 더욱 강화하여 “취재원을 익명으로 다루어야 할 의무를 진 경우 편집책임자는 취재원이 누구인지 물어 볼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규정을 덧붙였다.

취재원의 명시 원칙은 또한 AP편집국장회의 윤리강령에도 명시되어 있다. “취재원은 명확한 반대이유가 없는 한 공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취재원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75년 채택한 미국신문편집인협회(ASNE)강령도 “취재원의 비밀을 일단 약속한 경우에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그러한 약속을 가볍게 해서는 안된다. 취재원을 익명으로 다루어야 할 명백하고 절박한 이유가 없는 한 그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취재원의 명시 원칙이 모든 경우에 투명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취재원을 익명으로 다룰 때에도 가능한 한 익명의 이유나 동기, 취재원의 소속과 일반적 지위 등을 밝혀야 한다. 새 실천요강은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취재원 명시와 보호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①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②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③ 배경설명과 익명조건 ④ 취재원과의 비보호도 약속 ⑤ 취재원 보호를 포함한다.

정치적 평론의 자유선언

④ 평론의 원칙

신문윤리강령에는 구 실천요강에는 없는 ‘정치적 평론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다. 즉 제 9조 2항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 정당이나 특정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평론의 자유' 규정은 정치적 평론의 자유를 전향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이란 조건을 불임으로써 실제 반쪽짜리 자유로 후퇴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지지나 반대를 표명하는 등 신문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그것이다. 이 규정은 정치적 평론의 자유를 전향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실제 반쪽짜리 자유로 후퇴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이란 조건을 불임으로써 선거같이 중요한 민주정치의 행사에 있어 신문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평론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나라 통합선거법이 규정하는 정치적 평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후 일본에서 1948년 7월 공포되어 49년 1월 선거에 딱 한번 제한적으로 적용된 일이 있는 '선거운동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을 모델로 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이 법은 우리나라 통합선거법같이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서·도화'를 반포하거나 제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문도 여기에서 예

외를 두지 않았다.

이러한 특례법 아래서는 신문이 선거에 관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고 해석 되었기 때문에 신문들은 선거기간중 특정 후보자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의 비판을 회피했다. 또한 보도에 있어서조차도 일당일파에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당시 전후 일본의 신문정책을 직접 관掌해온 GHQ신문과는 이러한 특례법의 해석을 헌법이 보장하는 신문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특례법의 해석을 고쳐 신문에 선거평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사정에서 49년 11월 일본국회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요강은 문서·도화의 범주에서 신문을 제외시킨 것이다. 즉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문서·도화에서 신문을 제외시켜 "신문이 선거에 관한 사항을 '보도'로 게재할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 입안자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중 신문의 자유는 선거에 관한 '보도'에 한하고 평론은 제한한다는 것이다. 즉 △ 요강 148조의 '보도'에는 평론은 포함하지 않는다. △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들어 지지 또는 반대하지 않는 한 일반적 평론은 허용하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 △ 선거의 당락예상은 '보도'의 범위를 일탈한다.

이에 대해 일본신문협회는 선거 평론에 대한 제한은 신문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고 강경하게 반대, 신문계 캠페인을 주도했다. 협회는 3차례 결친 의견서를 제출하여 "각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시비논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문에 부여된 사회적 기능을 빼앗아 민주정치 운영원리에 영향을 준다고 확신 한다. … 사실에 관한 배경, 해석, 의견들을 알려주는 '평론'에 의해 민중은 비로소 자신의 판단을 결정하는 자료를 얻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아시히신문도 '선거에 있어 평론의 자유' (49년 12월 7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신문의 자유로운 평

론을 선거에 한하여 억제하는 것은 민주정치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국회를 규탄했다. 아사히는 보도와 평론을 구별하여 전자에 자유를 주고 후자에는 주지 않는 것은 신문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설이라고 꼬집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보도는 다만 객관적인 정확을 목적으로 하며 평론은 가치판단을 행하는 견해를 표명한다. 양자가 어우러져 신문은 비로소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신문계 전체의 반대 앞에 일본 국회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공직선거법 요강에 문서·도화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선거에서의 신문의 자유 보도는 물론 평론에까지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선거법이 문서·도화의 범주에 신문을 포함시켜 보도는 물론 평론에 족쇄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가 아닐 수 없다. 이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은 신문인들이 사문화시켜야 할 과제를 남긴다.

‘무료여행초대’ 금지

⑤ 언론인의 품위 유지 기준

개정위원회가 역점을 둔 분야의 하나가 언론인의 품위조항이다. 구 실천요강이 ‘품격’에서 “물질적, 정신적임을 막론하고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

었으나 새 실천요강은 이를 한층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곧 실천요강은 언론인 뿐 아니라 언론사도 포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소개를 위해 받은 샘플 제품은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존하는 기자단 문제에 관해서는 ‘공동취재나 친목’의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 되며”라고 하여 공동취재 또는 친목을 위한 기자단은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출입처, 관계기관, 기업, 단체로부터 금품이나 부당한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출입처 취재원으로부터의 식사초대 및 리셉션 등은 취재활동의 연장이라는 한계 안에서 “부당한” 향응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응에 “부당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음을 밝혀둔다.

이번 ‘언론인의 품위’ 실천요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언론적 종사자의 보급행위 및 광고판매행위를 금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부 군소언론사의 특이한 행태를 고려한 규정이다.

이 밖에 실천요강은 ‘언론인의 품

위’와 관련된 것으로 이른바 이해상충지침을 두었다. 언론인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직업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지침이다. 제14조 ‘재정정보의 부당이용금지’라는 규정을 두어 “기자는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 정보에 관해 기사화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기자가 기사를 썼거나 가까운 장래 기사를 예정인 경우 그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그 밖에 이해상충규정의 세부지침은 언론인이 정당을 가입하거나 또는 공직후보가 되는 경우 그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 언론인으로서 이해와 상충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개별언론사 강령이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기대한다.

⑥ 개인의 명예존중과 사생활보호 등

개인의 명예존중과 사생활보호도 특별히 강조하여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보호에 관해서도 “개인의 사적 주거 등 사생활영역에

이 강령도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보도지침, 선거보도지침, 북한보도지침 그리고 이해상충지침의 세부사항과 같은 분야가 있는데 이는 개별언론사가 마련할 뜻이라고 기대한다.

허락없이 침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영역에의 기자들의 접근을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기타 개인의 목적물을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취재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공인의 경우는 예외를 두어 취재의 자유가 공인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시대라는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를 인정하여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에 편집지침도 새로운 실천요강으로써,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특히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편집내용을 바꾸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언론현실에서 기업이나 기타 압력단체들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기사가 누락되거나 기타 편집내용이 바뀌어지는 잘못을 바로잡

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 실천요강은 범죄보도에 있어 인권존중을 강조했다. 특히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진촬영하거나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현재와 같이 피의자나 참고인이 검찰의 소환 받을 경우 의례화된 사진촬영은 인권 침해임을 분명히 했다.

지키지 않으면 장식품에 불과

한국언론을 대표하는 세 단체가 선언한 새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은 개정위원회가 장기간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도달한 전문적 의견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공청회에서 나온 언론계의 의견, 개별 언론사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기 때문에 종합적이며 체계화된 홀륭한 언론강령으로서 내용을 갖췄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홀륭한 강령이라도 언론인이 그것을 행동지침으로 준수하지 않으면 몸에 맞지 않는 화려한 옷처럼 쓸모없는 장식품이 될 것이다.

개정위는 강령의 효율적 시행이 중요함을 인식했으나 이번 개정위의

임무에는 이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결국 한국의 언론현실에서 강령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의 문제로써, 언론평의회제도, 언론음부즈맨제도, 무엇보다도 언론사 및 언론인들 스스로 윤리강령에 대한 신임과 가치에 관한 의식개발이 이루어짐이 중요하다. 앞으로 이 문제는 후속연구과제로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57년 신문윤리강령이 제정되고 61년 후속으로 신문윤리실천요강이 제정된 아래 그 동안 변화된 언론현실과 정보화사회의 출현 등 새로운 매체환경에 적응하여 한국언론의 새로운 행동지침을 마련코자 한 것이다. 물론 이 강령도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보도지침, 선거보도지침, 북한보도원칙 그리고 이해상충지침의 세부사항(예 : 언론인의 공직후보나 정당가입조건)등과 분야가 있는데 이는 윤리강령이나 실천요강보다는 개별언론사가 마련할 뜻이라고 기대한다. ④)